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하는 사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수직렬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485”를 “484”로, 일반직 계 “482”를 “481”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8”을 “39”로, 행정사무관 “158”을 “157”로,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를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로,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사서주사 3”을 “행정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로, 행정주사보 “30”을 “29”로,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를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로, “행정서기 22”를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22”로,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를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2”로 하며, “기록연구사 1”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영상 촬영·편집 담당) 1명”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485”를 “484”로, 일반직 계 “482”를 “481”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8”을 “39”로, 행정사무관 “165”을 “164”로,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를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로,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사서주사 3”

을 “행정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로, 행정주사보 “30”을 “29”로,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를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로, “행정서기 21”를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21”로,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를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2”로 하며, “기록연구사 1”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영상 촬영·편집 담당) 1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67”를 “165”로 하고, 일반직 계 “167”를 “165”로 하며, 행정주사 “53”을 “52”로, 행정주사보 “40”을 “39”로 한다.

별표 3의2 중 “167”를 “165”로 하고, 일반직 계 “167”를 “165”로 하며, 행정주사 “52”를 “51”로, 행정주사보 “40”을 “39”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9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통감시과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조사관리관	1명 (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5</u>	<u>484</u>	-1
일반직 계	<u>482</u>	<u>481</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38</u>	<u>39</u>	+1
·	·	·	
행정사무관	<u>158</u>	<u>157</u>	-1
·	·	·	
·	·	·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u>2</u>	<u><삭 제></u>	-2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신 설></u>	<u>2</u>	+2
·	·	·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사서주사	<u>3</u>	<u><삭 제></u>	-3
행정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신 설></u>	<u>4</u>	+4

•	•	•	
•	•	•	
행정주사보	<u>30</u>	<u>29</u>	-1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2</u>	<u><삭 제></u>	-2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u><신 설></u>	<u>2</u>	+2
•	•	•	
•	•	•	
행정서기	<u>22</u>	<u><삭 제></u>	-22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u><신 설></u>	<u>22</u>	+22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2</u>	<u><삭 제></u>	-2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u><신 설></u>	<u>2</u>	+2
•	•	•	
기록연구사	<u>1</u>	<u><삭 제></u>	-1
•	•	•	
•	•	•	
전문경력관(사진 담당)	<u>1</u>	<u><삭 제></u>	-1
전문경력관(사진 및 영상 촬영·편집 담당)	<u><신 설></u>	<u>1</u>	+1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의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5</u>	<u>484</u>	-1
일반직 계	<u>482</u>	<u>481</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38</u>	<u>39</u>	+1
·	·	·	
행정사무관	<u>165</u>	<u>164</u>	-1
·	·	·	
·	·	·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u>2</u>	<u><삭 제></u>	-2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신 설></u>	<u>2</u>	+2
·	·	·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사서주사	<u>3</u>	<u><삭 제></u>	-3
행정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신 설></u>	<u>4</u>	+4

•	•	•	
•	•	•	
행정주사보	<u>30</u>	<u>29</u>	-1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2</u>	<삭 제>	-2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신 설>	<u>2</u>	+2
•	•	•	
•	•	•	
행정서기	<u>21</u>	<삭 제>	-21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신 설>	<u>21</u>	+2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2</u>	<삭 제>	-2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신 설>	<u>2</u>	+2
•	•	•	
기록연구사	<u>1</u>	<삭 제>	-1
•	•	•	
•	•	•	
전문경력관(사진 담당)	<u>1</u>	<삭 제>	-1
전문경력관(사진 및 영상 촬영·편집 담당)	<신 설>	<u>1</u>	+1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7</u>	<u>165</u>	-2
일반직 계	<u>167</u>	<u>165</u>	-2
•	•	•	
•	•	•	
행정주사	<u>53</u>	<u>52</u>	-1
•	•	•	
•	•	•	
행정주사보	<u>40</u>	<u>39</u>	-1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의2]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7</u>	<u>165</u>	-2
일반직 계	<u>167</u>	<u>165</u>	-2
•	•	•	
•	•	•	
행정주사	<u>52</u>	<u>51</u>	-1
•	•	•	
•	•	•	
행정주사보	<u>40</u>	<u>39</u>	-1